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9-35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2019-3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19-37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19
2019-38	거창소방서 응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24
2019-39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자봉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35
----------	---------

제출일자 : 2019.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함
-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민간위탁 시행

## 2. 센터현황

- 가. 시 설 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나.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 ~ 2021. 12. 31.(3년)
- 다. 대상시설 : 31개소
- 라. 인력기준 : 3명(센터장 1, 직원 2)
- 마. 사 업 비 : 74,000천원 (국 37,000 도 11,100 군 25,900)  
※ 2020년부터 매년 100,000천원 규모로 운영
- 바. 위탁사무
  - 1)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과 식사 지도
  - 2)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위생관리 지침과 위생교육 자료 개발
  - 4)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과 정보제공·공유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수탁기관 선정 절차

-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 나. 선정기준
  - 1)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2)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 3)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센터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등

#### 다. 자격요건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2)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FMS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4. 추진일정

- |                      |                 |
|----------------------|-----------------|
| 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 2019. 4. ~ 5. |
| 나. 위탁관련협약 체결과 공증     | : 2019. 6.      |
|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 2019. 8. ~ 9. |

#### 5.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붙임 1>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1) 당초 예산 : 100,000천원  
※ 1회 추경 시 국·도비 감액으로 74,000천원으로 조정 계획
- 2) 비용추계서 : <붙임 2>

## 관 계 법 령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 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조

나. 관련 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전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50%, 도비15%, 군비 35%로 추진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을 따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	군비	26	35	35	38	38	172
	국비	37	50	50	55	55	247
	도비	11	15	15	17	17	75
	소계(a)	74	100	100	110	110	494
세출	군비	26	35	35	38	38	172
	국비	37	50	50	55	55	247
	도비	11	15	15	17	17	75
	소계(b)	74	100	100	110	110	494

(1) 2019년도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74백만원)
  - 인 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인건비 : 29백만원/1,600천원×3명×4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 45백만원(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 : 7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2) 2020년도

- 비용구성 : 민간위탁 운영비(100백만원)
  - 인 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인건비 : 59백만원/1,640천원×3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 41백만원(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추계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다. 재원조달 방안 : 붙임

3. 기타 의견 : 없음

4. 작성자 :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원 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74	100	100	110	110	494
의존 재원	소 계	48	65	65	72	72	322
	국비 보조금	37	50	50	55	55	247
	도비 보조금	11	15	15	17	17	75
자체 수입	소 계	26	35	35	38	38	172
	지방세	26	35	35	38	38	17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의존재원(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

## 3. 협의 사항

- 2019년 균비 26백만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균비 35백만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균비 38백만원 확보 요청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019-36
----------	---------

제출일자 : 2019.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①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당해 부지 주변에는 거창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주택가가 확산되고 있으나
- 현재까지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 등의 민원과 건의가 수차례 있는 곳으로
- 향후 거창읍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 공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원 시설의 선제적 조성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0.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64번지 등 6필지
- 토지면적 : 3,421㎡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21	437,251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64	답	810	99,387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1	답	1,207	165,479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 민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2	답	102	13,005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3	답	390	49,725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4	묘	99	12,177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 조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575	전	813	97,478	2019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 * 조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라. 향후계획

- 2019.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 3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19. 4월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 2020. 1월 ~ 12월 : 도시공원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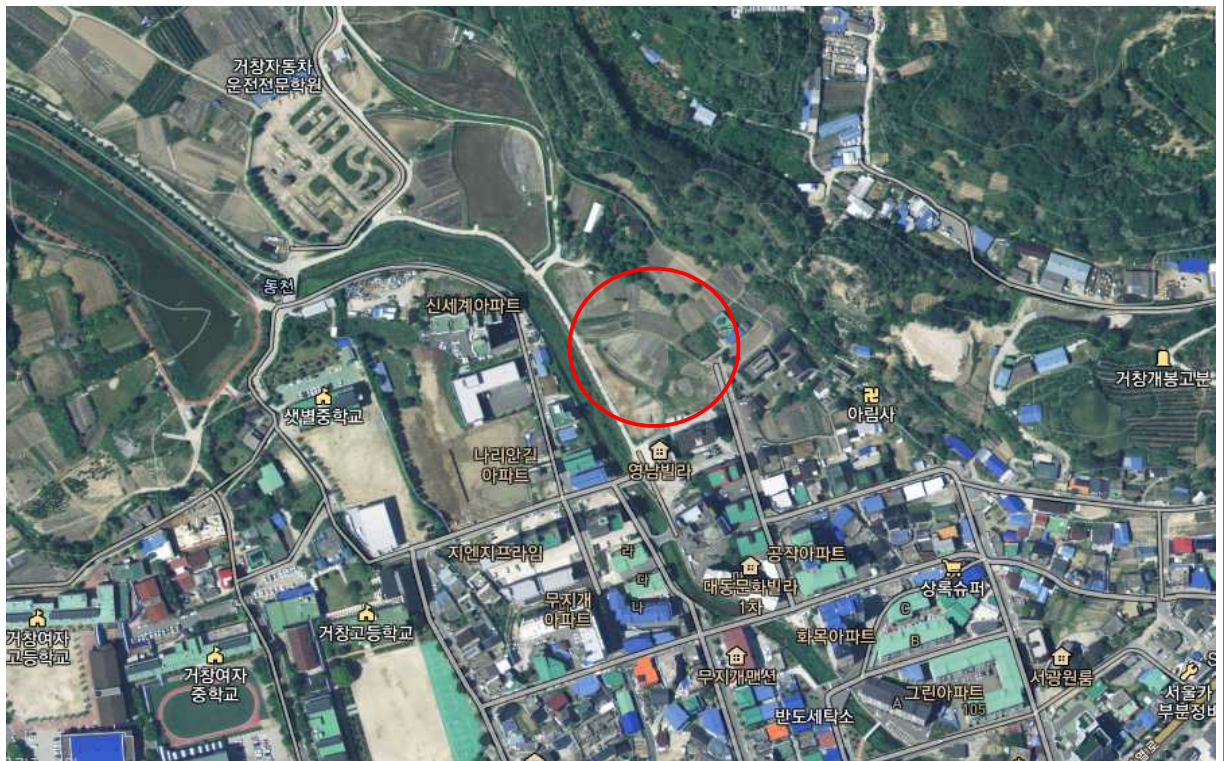
## 마. 기대효과

- 거창읍 대동리 내 유휴지에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도시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제공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기여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4. 위치도







## ②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1. 제안이유

- 거창교 남단 군계획도로(중로2-17호선, 지방도1084호선)는 우리군 주간선도로구간으로 차량통행량 대비 차로 폭 협소, 교통신호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우심하여,
-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연접 토지, 지장건물의 매입)가 필요한 실정임.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472-1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금1,250백만원(보상비 950, 공사비 300)
- 취득물건 : 토지(3필지) A=261㎡ 및 지장건물 2동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D=30.0m)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7,746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472-18	대지	142.0	107,792	김*태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472-19	대지	50.0	37,955	정*희
매입	토지	거창읍 김천리 398-3	대지	69.0	38,799	정*희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472-18	-	234.85	39,387	김*태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398-3	-	241.7	123,813	정*희

※ 기준가격 : 토지(공지시가 × 면적), 건물(시가표준액)



## 다. 추진경과

- 2018. 3. ~ 5. :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2018. 6. ~ 7. : 관련 인·허가 협의 추진
- 2018. 9. ~ 12. : 편입물건 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수렴 등 협의
- 2019. 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라. 기대효과

- 거창읍 거창교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기여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4.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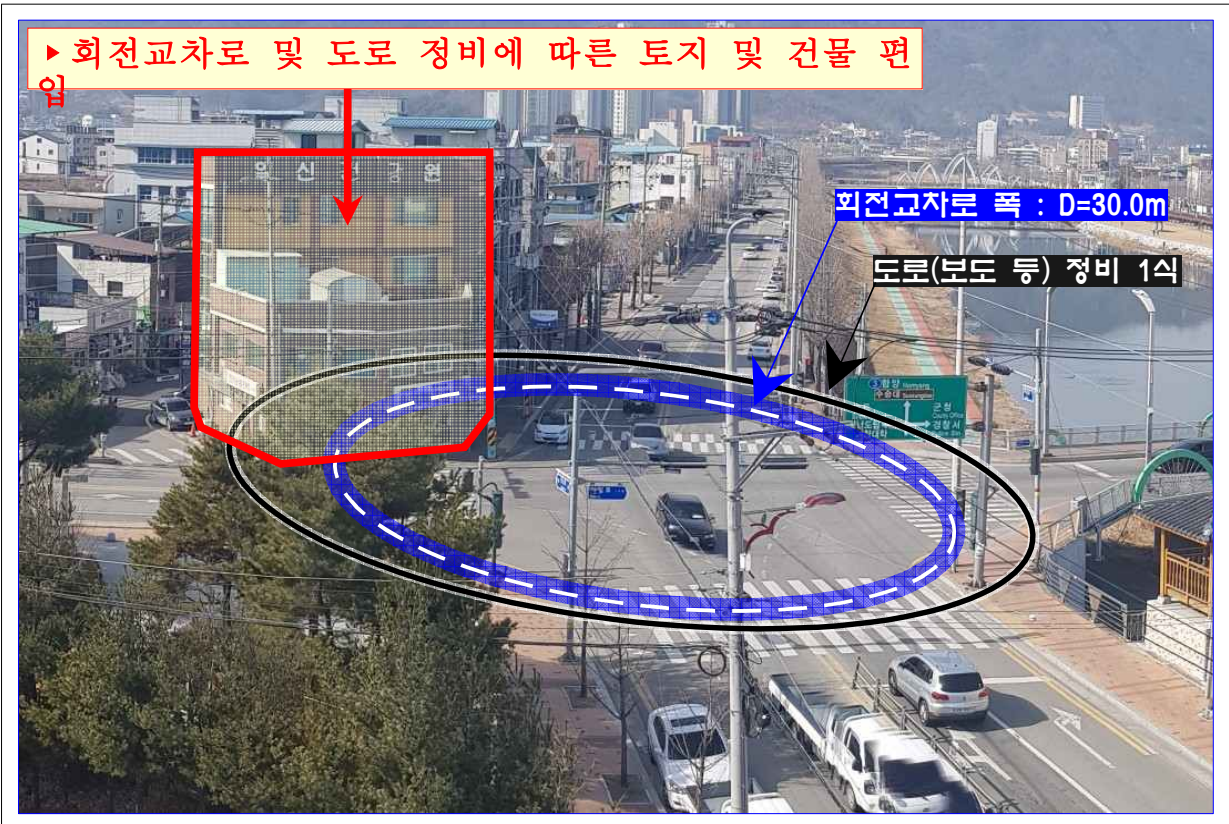




## 5. 지적현황



## 6. 현장사진



## 관 계 법 령(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37

제출일자 : 2019. 03.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요구이유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 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나. 사 업 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다.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라.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 위탁기간 : 2016. 3. 1. ~ 2019. 2. 28.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봉고3	특장탑차	99수1020	2011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한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 유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목욕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음
- 담당부서의 업무과중과 이용자의 원활한 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함

####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다. 향후일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지정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신정란)
  - 위탁기간 : 3년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관리 등

####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운영계획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목욕에 대한 욕구해소와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함

## 1.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 거동불편 독거노인 재가목욕서비스
  - 이용인원 : 960명(18년 기준) / 월평균 이용자 40명, 월2회씩 목욕(하루 4~5명)
- 운영방법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 사업비 : 30,000천원(군비)

## 3. 그간의 추진사항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16. 3. 1. ~ 2019. 2. 29./3년간
-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명,천원)

구분 \ 년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수혜자	630	840	820	960	누적인원
예산지원	27,000	28,000	28,000	28,000	

#### 4. 위탁계획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신정란)/수탁기관 재지정
-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12. 31.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 관리 등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봉고3	특장탑차	99수1020	2011	

#### 4. 위탁조건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 위·수탁 협약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7. 소요예산 : 30,000천원/년

#### 8.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 문제 해결로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가족의 부양 책임 감소와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

## 관 계 법 령(요약)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 거창소방서 용양119지역대 -

##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2019-38
----------	---------

제출일자 : 2019. 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거창군 북부지역(용양면, 주상면, 고제면)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수해 사각지대로 재난의 신속대응이 어려워 용양권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거창소방서)에 「거창소방서 용양119지역대」 신축부지 사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소방서 용양119지역대
- 소 재 지 : 거창군 용양면 노현리 112 등 3필지
- 건축규모 : 연면적 779.12㎡, 2층 1동(부지 2,076㎡)

구분	면적	층별	비고
1층	481.64㎡	사무실, 차고, 창고, 감염관리실	
2층	297.48㎡	식당, 대기실, 체력단련실, 의소대사무실	

- 소 방 력 : 인원 10명, 차량 2대

#### 나. 지원계획

- 재산현황

(단위:㎡,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용도지역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076		
토지	용양면 노현리 112	답	349	16,054	제1종일반 주거지역
	용양면 노현리 113	답	1,094	48,683	
	용양면 노현리 114	답	633	29,118	

- 사용면적 : 2,076㎡(전체면적)

○ 사 용 료 : 무상사용

- 웅양면 노현리 112의 2필지 부지는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지사)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며 무상사용 가능 (계약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 사용기간 :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가 소방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사용허가는 5년 단위로 갱신함)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 영구시설물 축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지사)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시 축조 가능

⇒ 동의 후 상호 합의서(붙임2) 체결 및 사용수익 허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 3. 추진경과

- 2017. 2월 : 웅양119지역대 건립부지 지원 검토보고
- 2017. 4월 : 관련부서(도시건축과) 적합성 검토
- 2017. 6월 : 군·거창소방서·웅양면 합동 현장 확인
- 2017. 9월 : 부지 매입비 확보(2회 추경: 3억원)
-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8. 2월 : 부지매입 완료
- 2019. 1월 : 부지 무상사용 협조요청(도 소방행정과)
- 2019. 2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4. 향후일정

- 거창군 ⇔ 경상남도 토지사용 협약체결 : 2019. 3.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거창군 ⇒ 경상남도) : 2019. 3.
-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신축 : 2019. 3. ~

## 5. 기대효과

- 원거리 지역의 체계적인 소방안전망 구축
-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방서비스의 사각지역 해소
-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활동 체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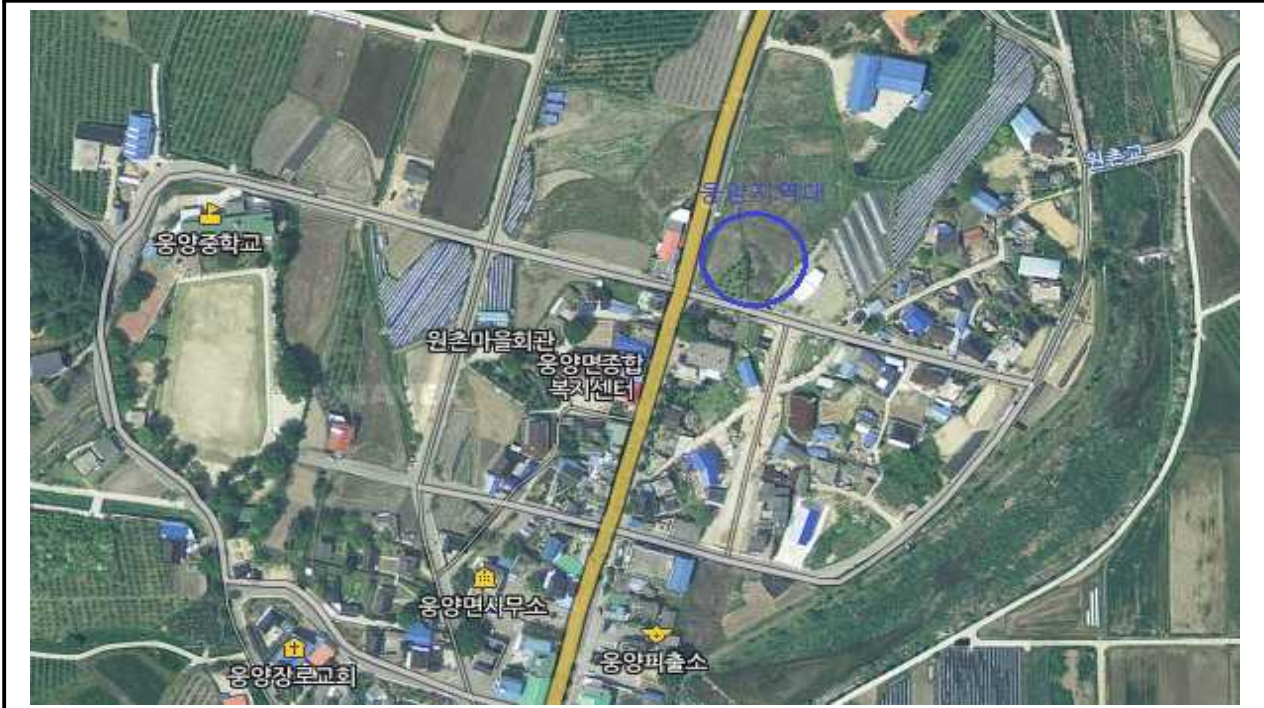
## 6.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제(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참고자료 : 관내 119안전센터 설치 사례

관 서 명	위 치	부지 면적(m <sup>2</sup> )	건축 연면적(m <sup>2</sup> )	부지소유	사용료	관할구역
거창소방서 (119구조대)	대평리 1359-1	5,626	804	거창군 (1994.4.26.)	무상	군 전체
대평119 안전센터	대평리 1359-1	5,626	198.52	거창군 (1994.4.26.)	“	거창읍·남상·신원· 주상·웅양면일원
위천119 안전센터	장기리 509	1,633	393	거창군 (2006.9.22.)	“	위천·북상·마리· 고제면일원
가조119 안전센터	마상리 467-6	1,026	212	거창군 (2004.1.6.)	“	가조·가북·남하면 일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웅양119지역대 신축예정지 - 위치도>



<웅양119지역대 신축예정지 - 현장사진>

## 「거창소방서 응양119지역대」 설치에 따른 신축부지 사용에 대한 합의서(안)

제1조(목적) 「거창소방서 응양119지역대」 설치함에 있어 건축물 신축 및 부지의 사용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 부지) 경남 거창군 응양면 노현리 112,113,114번지(답, 2,076㎡)내 설치를 한다.

제3조(건축 면적) 「거창소방서 응양119지역대」 면적은 건축물 2층(1층 481.64㎡ 2층 297.48㎡)으로 1동을 건축한다.

제4조(사용기간) 「거창소방서 응양119지역대」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소방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폐쇄할 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쇄함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부지의 사용) 「거창소방서 응양119지역대」 신축부지는 행정재산임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차후의 건물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제6조(건물의 철거) 제4조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반환한다.

제7조(사용료) 경상남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가 면제되고,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창군수에게 5년마다 무상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사용 행위 제한) 경상남도지사는 거창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위의 합의 사항에 대해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합의합니다.

2019. . . .

토지 소유권자 : 거창군 대표자 거창군수 (인)

토지 사용권자 : 경상남도 대표자 경상남도지사 (인)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 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39

제출일자 : 2019. 3.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요구이유

주택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서민층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

나. 위탁기간 : 2019. 4월 ~ 2021.12월 (3년간)

다. 사업비 : 776백만원/년(국388.2(50%), 도116.4(20%), 군271.7(30%))

○ 슬레이트 처리 : 510.7백만원(국255.3, 도76.6, 군178.7)

○ 지붕개량 지원 : 265.7백만원(국132.8, 도39.8, 군93)

라. 사업량 : 슬레이트 주택 240동(철거 152동 및 지붕개량 88동)

마. 위탁비용 : 62.8백만원/년(사업비의 8%)

바.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체결

○ 슬레이트,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처리, 지붕설치 등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

○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 사. 그간 추진현황

○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2013년)

(단위: 동)

합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10,784	7,914	55	1,564	917	61	273

○ 그간 추진실적

구분	철거현황				전체슬레이트
	철거비율(%)	합계(누적)	환경과	도시건축과	
2013년	1.3	138동	129동	9동	10,784동
2014년	2.8	300동	100동	62동	10,622동
2015년	5.4	562동	199동	63동	10,360동
2016년	7.4	751동	136동	53동	10,171동
2017년	11.4	1,119동	368동	-	9,803동
2018년	12.5	1,349동	230동	-	9,435동

○ 그간 추진방법

- 2013년~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2017년 :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 2018년 : 시설비로 업체 입찰 직접 수행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확대,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 민간경상보조(307-02) ⇒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예산의 변경사용

아.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업체선정 : 공개입찰(1개 업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후 선정

○ 참가자격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위탁업체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절대평가(40점), 상대평가(60점)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심의위원 평가, 상대평가)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 평가

- 상대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 2021. 12월(3년간)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2013~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수행 추진한 결과,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9.1 환경부)

#### 다. 향후일정

○ 예산의 변경사용 : 2019. 4월중

○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9. 3월말 ~ 4월중

○ 업체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4월말

○ 위수탁 사업추진 및 정산 : 2019. 5. 1. ~ 2019. 12. 31.

####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사업비의 8%

####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석면관리 안전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거두고자 함.

## I 민간위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9.1 환경부)

## II 민간위탁 개요

- 위탁방법 : 공개입찰 /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후 1개 업체 선정
- 위탁기간 : 2019. 4. ~ 2021. 12. (3년간)
- 사업비 : 776백만원/년(국388.2(50%), 도116.4(20%), 군271.7(30%)
  - 슬레이트 처리 : 510.7백만원(국255.3 도76.6 군178.7)
  - 지붕개량 지원 : 265.7백만원(국132.8 도39.8 군93)
- 사업량 : 슬레이트 주택 240동(철거 152동 및 지붕개량 88동)

구 분	계	환경과		도시건축과		행복농촌과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건물동수	240동	94동	88동	5동	38동	15동
예산액 (천원)	776,480	315,840	265,760	16,800	127,680	50,400

- 위탁비용 : 62.8백만원/년(사업비의 8%)

※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가능(매년 협약 체결)

-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체결
  - 슬레이트,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처리, 지붕설치 등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
  -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 수탁자격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Ⅲ 그간 추진 방법

- 2013년~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 2013년부터 본사업 추진
  - 2017년 :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 2018년 : 시설비로 업체 입찰 직접 수행
  - 2019년 :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년 민간위탁 추진 배경

- '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 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확대,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또는 지자체 직접수행 방식으로 권고 (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 민간경상보조(307-02) ⇒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예산의 변경사용

## IV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접수 : 2019. 2월 ~ 3월 중
-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18. 3월 ~
- 민간위탁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업체선정 : 2018. 3월 ~ 4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019. 4월 ~ 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월

## V 기대효과

- 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해체·제거)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 관 련 법 령(요약)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5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19. 2. 4]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 13, 일부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7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